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0 민 사 부

결 정

사 건 [redacted]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채권자, 항고인 1 [redacted] 주식회사

[redacted]
대표이사 [redacted]

2 [redacted]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redacted]

채무자, 상대방 [redacted]

[redacted]
소송대리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 1 심 결 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4. 10.자 [redacted] 결정

주 문

1. 제1심 결정 중 아래에서 가처분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채무자는 서울 [redacted] 대 17m²에 차량을 주차하여 서울 [redacted] 대 173m²로 출입하는 공사차량 및 공사장비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지급한다.

2.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주문 제1의 가항 및 채무자는 채권자 [redacted] 주식회사가 서울 [redacted] 대 173m²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가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각 지급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권자 [redacted] 서울 [redacted] 이하 [redacted] (라고만 한다) [redacted] 대 173m²(이하 '채권자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채권자 [redacted] 주식회사는 채권자 [redacted]로부터 채권자 토지상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

는 공사를 도급받아 채권자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채무자는 [redacted] 대 17㎡(이하 '채무자 토지'라 한다. 이하 토지는 모두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채무자 토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redacted] [redacted]로 둘러싸인 순번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다.

다. 채무자 토지와 [redacted] 토지의 일부에는 채권자 토지와 [redacted] [redacted] 등 인접 토지에서 같은 동 [redacted] 등으로 이루어진 왕복 4차선 도로(이하 '4차선 도로'라 한다)로 나아가기 위한 폭 4.1미터, 길이 9미터 가량의 골목길이 나 있다(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즉, 이 사건 통행로는 채무자 토지(4차선 도로에서 통행로 입구쪽을 바라보았을 때 왼쪽 부분)와 [redacted] [redacted] 토지의 일부(4차선 도로에서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 부분)로 이루어져 있다.

라. 채권자들이 이 사건 채권자 토지 위에 공사를 하기 위하여는 4차선 도로에서부터 채권자 토지와 근접한 이 사건 통행로의 안쪽까지 차량의 출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 사건 통행로 중 채무자 토지 부분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여 두고, 공사 차량을 통행로 안쪽으로 접근시키기 위하여 잠시 채무자의 차량을 비켜달라는 채권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차량이 이 사건 통행로에 진입하지 못하여 채권자 토지상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다.

2. 채권자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인데도 채무자는 통행로에 차를 세워둠으로써 채권자들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방해의 배제로

서 채무자에 대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들은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통행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통행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대법원 2013. 2. 14.자 2012마1417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① 내지 ⑤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의 차량 통행을 막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 자신의 차를 주차시켜 덩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로 통행의 자유를 위법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통행로는 채권자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와 4차선 도로를 연결하는 길로서 3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근 주민들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도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한 통행에 제공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소갑 제5호증, 소갑 제29호증의 1, 2, 소갑 제35호증 등).

② 채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통행로가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상태에

서 2015. 12.경 통행로 일부를 채무자 소유 [REDACTED] 에이동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현재 채무자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채무자는 위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채권자들을 제외한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과하여 통행로 안쪽 골목에 주차하는 것에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③ 채권자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드나드는 것은, 비록 현재 채권자들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기존 주택의 철거 및 신축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차량 통행의 범위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차량 통행 범위와 크게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한다.

④ 이 사건 통행로 중 채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부분은 채무자 토지의 경계를 상당 부분 넘어서 [REDACTED] 토지의 일부까지 차지하고 있다(소갑 제31, 32호증). 즉, 채무자로서도 위 [REDACTED] 토지를 일부 침범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 토지 위에 채무자의 차량 1대를 온전히 주차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채무자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통행로에 다른 차량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 채무자의 토지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채무자 소유 [REDACTED] 에이동 건물의 임차인들 [REDACTED] 2018. 6.경 이 사건 통행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하여 채권자들의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고 채권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일반 교통방해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서울남부지방법원 [REDACTED] 2) 확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채권자들로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침해행위의 제거로서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설령 이 사건 통행로가 공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뿐 아니라 과도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때에도 인정되는 것인바(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3580 판결 참조),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채권자 토지에서 4차선 도로로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로서 30년 이상 채권자 토지와 그 인근 토지 거주자들이 도보 또는 차량을 이용한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등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응 채권자[REDACTED]는 민법 제21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도보 또는 차량으로 통행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차량 통행에 반대하며 계속하여 채권자들의 이 사건 통행로 진입을 방해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자는 이 사건 통행로 중 채무자 토지 부분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채권자 토지로 출입하는 공사차량 등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건축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의 금지도 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채무자가 위에서 본 주차 이외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의 건축공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가처분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되, 간접강제 금액은 채무자 가가처분결정을 위반할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반행위 1회당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집행관 공시신청은 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결정 중 위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채권자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가처분을 명하고, 채권자들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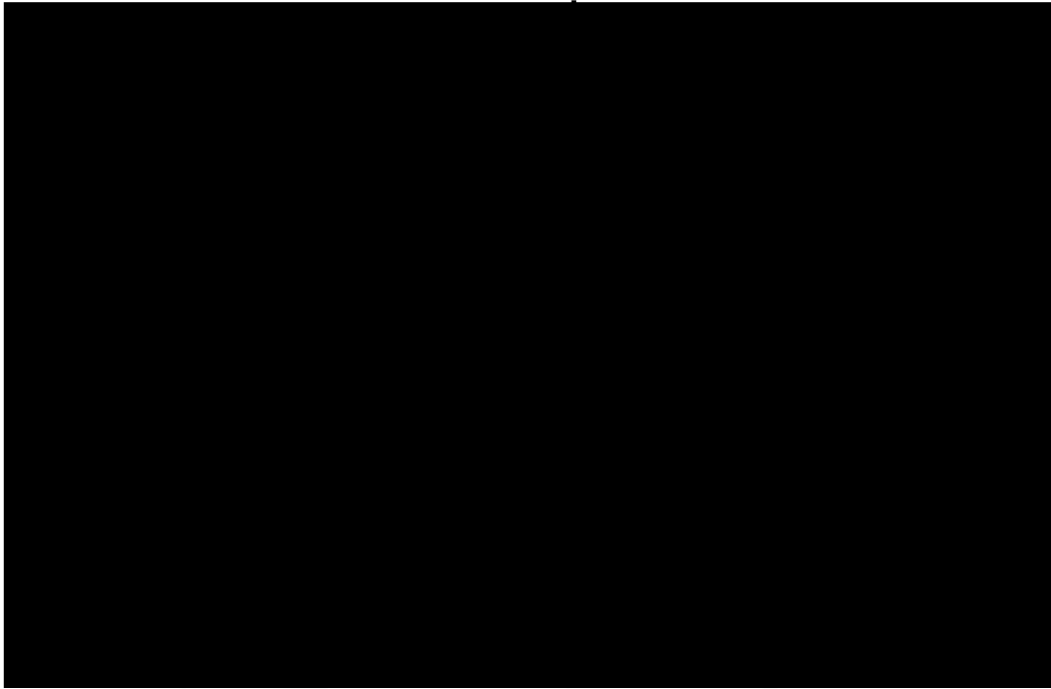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정본입니다.

2018. 10. 12.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